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 10. .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제정)이유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계·설치하는 경우 이원화되어 있던 가스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에 대한 협력 제공 관계전문기술자 확대(안 제3조제1항)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 설계시 가스설비에 대하여 전문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외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함

나. 건축설비설치확인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개정)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31. ~ 12.31.) 결과(추후 협의)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추후 협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건축설비설치확인서

1. 일반 사항	건축물 개요	소재지					
		용도		연면적		층수	
	시공자	성명		면허번호			
		상호		주소			

2. 확인 사항	구분	확인의견	확인일자
	급수·급탕설비		
	배수·통기설비		
	배관설비(급배수)		
	위생기구설비		
	열원기기설비		
	공기조화기기설비		
	덕트설비		
	배관설비(공기조화)		
	냉방설비		
	난방설비		
	배관설비(냉난방)		
	가스설비		
	소화 및 배연설비		
	오물처리설비		
	승강기(기계부문)		
	승강기(전기부문)		
	전기설비		
	피뢰침설비		
기타사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 기술사 확인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확인자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인) 자격번호 :
(인) 자격번호 :
(인) 자격번호 :
(인) 자격번호 :
(인) 자격번호 :

건축주 · 공사감리자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u>「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u>(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